

충청북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

# 충청북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09년 4월 6일 연만흠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4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제명변경 : 충청북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 위원회업무 대행에 따른 중복내용 정비
  - 충청북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서 대행(안 제3조제1항)
  -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삭제(안 제2조, 제4조)
- 자구수정
  - 수당 등의 지급→ 수당 등(안 제7조)
  - 개최→개회, 필요시에는→필요한 경우에는 등

#### 4.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연만흠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심의기능이 상이한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 위원회중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여 위원회를 정비하며, 또한 불합한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상에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